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혜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64
----------	-----

발의년월일 : 2019년 3월 29일
발 의 자 : 김혜련, 양민규, 홍성룡,
채유미, 송아량, 이은주,
이병도, 오현정, 김동식,
김용연, 봉양순, 서윤기,
이영실, 이정인, 김화숙,
김소양 의원 (16명)

1. 제안이유

재단 운영의 근본이 되는 정관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토록 함으로써 재단 운영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감시권한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에 사전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정관) ①·② (생략) <u><신설></u>	제6조(정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